

#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내용 해설



전형배

강원대학교  
법학전문대학원  
교수

## 1. 경과

-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중대재해처벌법’)이 2021. 1. 8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, 2022. 1. 27. 시행이 예정
- 영국의 사례 모델: 영국의 2007년 법인중과실치사법(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)의 입법 영향을 받아서 제정
- 영국과 차이: ① 영국의 법률과 달리 주된 책임추궁의 대상을 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으로 삼음.  
② 처벌 요건도 영국의 포괄적 중과실 책임과 달리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나열하는 고의범 처벌방식
- 산안법과 차이(처벌행위과 대상): 현장 작업자의 안전보건규칙상 개별 조치 의무가 아니라, 경영책임자등에게 넓은 범위의 관리의무를 부여하고, 의무위반에 대한 중한 처벌을 예정
  - 곧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이 발간될 예정. 여기서는 그 이전에 학술적 쟁점 제시



## II.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구조와 성격

### 1. 중대재해처벌법

- 총칙, 중대산업재해, 중대시민재해, 보칙 등 4개의 장과 주로 시행일과 관련이 있는 부칙
- 제1장 총칙에서 핵심적 규정은 제2조 정의 규정
  - 중대재해처벌법은 ‘중대재해’를 ‘중대산업재해’와 ‘중대시민재해’로 구분(제2조 제1호), 중대산업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의 ‘중대재해’와 달리 정의(제2조 제2호)
  -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서 사용하지 않는 ‘중사자’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, ‘사업주’의 개념도 정의
  - ‘경영책임자등’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여기에 3가지 유형의 사람을 포함
  - 새롭게 정의된 각 용어의 해석은 향후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던가 의무 부담의 범위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
- 제2장 중대산업재해
  - 법률의 적용 사업장 범위(제3조)
  -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(제4조), 그중 제1호와 제4호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해석과 적용상 논의는 결국 시행령의 해당 부분에 관한 논의가 될 것

중대재해처벌법은 ‘중대재해’를 ‘중대산업재해’와 ‘중대시민재해’로 구분(제2조 제1호)하고, 중대산업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의 ‘중대재해’와 달리 정의(제2조 제2호)하고 있다.





-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하였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의무(제5조)
-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과 양벌규정(제6조 및 제7조)
-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처분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수강명령 제도를 신설(제8조)

#### ■ 제4장 보칙<sup>1)</sup>

-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(제13조)
- 형사재판에서 심리 절차상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, 전문심리위원의 절차참여원칙(제14조)
- 징벌적 손해배상(제15조): 타 법령에 규정된 것과 비슷한 구조인데 배상액의 상한을 일반적 수준인 3배와 달리 5배로 정하고 있음.

## 2. 시행령

- 시행령 중 주요한 부분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정한 제2조
  - 시행령 제2조는 별표1을 통해서 질병 발생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직업성 질병 24가지
  - 시행령 제4조는 모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'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'를 구체화 → 핵심 조항

1) 본 발표문의 취지에 따라 제3장 중대시민재해를 건너뛴

- 시행령 제5조는 모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'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'를 구체화
- 시행령 제6조는 안전보건교육 수강명령의 내용을 자세히 정함
- 시행령 제12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기준과 내용 및 절차를 규정

### 3. 법령의 성격

- 중대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가 최종 목적인가?
  -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는 법률의 목적을 “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... 을 운영하거나 ... 안전·보건 조치의무<sup>2)</sup>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...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”라고 규정
-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 특별법적 위치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
  -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약칭뿐 아니라 전체 법명이 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”로서 입법의 핵심 목적은 추상적인 산업재해 예방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처벌에 있음을 명확히 함
  - 그리고 법률의 핵심 내용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포괄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할 때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
  -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법명은 “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”
  - 형법의 폭력행위 등에 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”을 생각하여 보라. 시민들은 이 법률을 중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처벌을 하는 법률로 인식. 단순히 중한 폭력행위를 예방하는 법률이라고 이해하지 않음. ☺

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포괄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할 때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.

2)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, 제5조 및 제9조는 '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'라고 표현하는데 목적 규정에서는 '안전·보건 조치의무'라고 규정하여 일관성이 없다는 인상을 준다.